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20호서식]

(3쪽 중 1쪽)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진행번호: 호 . . .

수 신: 공소청의 장 발 신: 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제 목: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수사관 ㊞

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상 사건	20XX-XXX호 000위반
승인 대상 보전요청	20XX보전XX호
긴급보전요청 일시	0000. 00. 00. 00:00
긴급보전요청한 전자정보	**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**
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	**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**
긴급보전요청한 자의 직급 및 성명	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

【별지 1】

긴급보전요청한 전자정보

1. 대상 계정

○ 1234@********.com, abcd@********.com

○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

2. 요청한 정보의 범위

○ 가입자 정보: 사용자 이름, 생년월일, 계정생성일, 휴대전화번호, 복구용 이메일, 인증정보, 가입/탈퇴 일시 및 IP,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

○ 계정 보안 정보: 2단계 인증정보, 복구 전화번호/이메일, 내 기기, 로그인 수단정보 등

○ 접속기록: [UTC+9] 0000. 00. 00. 00:00부터 0000. 00. 00. 00:00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

○ 기기 정보: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(IMEI),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, 통신사 정보, 쿠키값 등

【별지 2】

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

1. 범죄사실의 요지

피의자는 0000. 00. 00. 00:00[우리나라 표준시인 UTC+9 기준]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

2. 긴급보전요청 사유

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